

과 업 지 시 서

1. 적용범위

본 과업지시서는 제천시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기계 구매에 따른 납품기한, 공급 농기계의 규격(형식)제품 납품 및 파손농기계의 교환,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

2. 적용사항

- 가. 건 명 :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(조사료 수확장비) 자주식 베일러 구입
- 나. 추정금액 : 금450,000,000원(금사억오천만원) ※부가세 포함
- 다. 물품내역 : 구매규격서 참조

3. 납품기한 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4. 납품 및 납품완료

- 가. 계약자는 계약한 농기계를 제천시농업기술센터(분임)경리관과의 계약 기간 내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 계약업자(또는 계약업체직원)가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납품완료 시 관계 직원의 농기계 검수를 받아야 하며, 불합격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신청된 동일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.
- 다. 대금지급은 검수를 완료한 후 납품업자와 상호 협의 하에 해당 부서의 검수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.

5. 납품장소 : 제천시농업기술센터

6. 납품특수조건

- 가. 사업의 특성상 농기계수리 요구 시 신속한 수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.
- 나. 농기계는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농기계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납품하여야 한다.

7. 기타사항

- 가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농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제천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나. 계약자의 구입 장비 목록에 기재된 모든 농기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,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1) 농기계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- 2) 제천시의 과업지시에 2회 이상 불응 했을 때
- 3) 기타 관계법령(계약조건) 및 과업지시를 위반 했을 때

다. 관계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, 파손(불량)된 농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, 납품 후(사용 전) 파손(불량)된 농기계가 발견될 시에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